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253

발의연월일: 2020. 9. 25.

발 의 자:최혜영·오영환·김상희

김남국 • 인재근 • 이성만

고영인 · 신동근 · 허종식

송재호 · 이용빈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및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전문성 있는 특정 기관에 위탁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기하고자 함.

장애아동의 복지지원,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홍보 등을 위해 지역 장애아동지원센터를 시·군·구에 설치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설치되어 법적 기능이 실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장애아동에 대한 업무량,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시·도에 설치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발달장애인법)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시·도에도 설치 가능하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등).

법률 제 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공공기관에"를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특별자치도·시·군·구"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로 하고, 같은 제6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각각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시·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지역센터의 운영을 각각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구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 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각각 "특별자 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각각 "특별자 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및 제5항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 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34조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 또는"을 "시 · 도지사 또는"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행 개 아 혅 정 제8조(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① 제8조(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의 운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기관에_----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① | 제9조(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 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수 ·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 여 특별자치도・시・군・구(자 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특별시·광역시·특별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이하 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 "지역센터"라 한다)를 설치 • 운 영할 수 있다.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 6.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 이 위탁하거나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업무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의 규모 및 장애아동의 수를 고려하여 인근지역과 통합하여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센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센터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센터의 운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 다
- ⑤ (생략)
- 제10조(관계 기관 또는 단체와의 제10조(관계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협력) ① (생 략)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복지 지원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 • 구청장----

6 <u>시·도지사 및 시장</u>
<u>· 군수 · 구청장</u>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u>· 구청장</u>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u>• 구청장</u>

- ④ 시·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u>기관에, 시장·군수</u>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운영 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지역센터의 운영을 각각 위탁할 수 있다.
 - ⑤ (현행과 같음)
- 연계·협력) ① (현행과 같음)
- ② 시・도<u>지사 및 시장・군수</u>

여 지역센터와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사이의 원활한 연계·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 야 한다.

제12조(장애의 조기발견) ① 시장 ·군수·구청장은 「국민건강 보험법」 제52조, 「의료급여 법」 제14조 및 「모자보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영유 아에 대하여 정기적인 건강검 진·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경우 장애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하 기 위하여 선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3조(복지지원의 신청) ① 장애 아동 및 그 보호자는 <u>시장·군</u> 수·구청장에게 이 법에서 정 하는 복지지원을 신청할 수 있 다. 다만, 제22조에 따른 보육 지원은 「영유아보육법」 제34 조의4를 따른다.

② ~ ④ (생 략)② ~ ④ (현행과 전제14조(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①제14조(복지지원 대상

제12조(장애의 조기발견) ① <u>특별</u>
<u>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u>
<u> 장·군수·구청장</u>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복지지원의 신청) ①
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u> 군수ㆍ구청장</u>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보지지워 대산자 선정)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조 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의 신청을 받은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재산, 장애정도, 가구특성 등을 고려하여 복지지원 대상자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u>시장·군수·구청장</u>은 30일 이내에 복지지원 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복지지원의 내용 및 복지지원 이용권의 금액 등을 결정하여 복지지원 신청자에게 즉시 알려주어야 한다.

제16조(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연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한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게 복지지원 제공기관을 연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지지원 제공기관과의 연계는 제9조에 따른 지역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② <u>시장·군수·구청장</u>은 복지 지원 대상자와 복지지원 제공

기관을 연계할 때에는 복지지원 대상자에게 복지지원 제공시간 및 방법·비용부담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생략)

- 제17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저 ① <u>시장·군수·구청장</u>은 장애 아동에게 적합한 복지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별지원계 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를 제9조에 따른 지역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u>시장·군수·구청장</u>은 개인 별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보호자, 복지지원을 제공하는 인력, 복지 관계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18조(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개 전인정보보호) ① <u>시장·군수·</u> <u>구청장</u>과 제16조제1항 및 제17 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장애아동과 그

	③ (현행과 같음)
()	17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① <u>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u>
	지사・시장・군수・구청장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
	· ③ (현행과 같음)
ᅦ	18조(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개
''	인정보보호)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 구청장
	1 0 0

가족에 대한 정보의 수집과 관리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생략)

- 제31조(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직 무) ① (생 략)
 - ②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장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역 센터로부터 복지지원 제공의뢰 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복지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③ ④ (생 략)
 - ⑤ <u>시장·군수·구청장</u>은 복지 지원 제공기관의 설치 및 운영 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32조(장애영유아 어린이집) ① (생 략)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현행과 같음	-)	
	① (현행과	제공기관의 같음) 	직
_ <u>특별</u>	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 구청장	
	 ④ (현행과 <u>특별자치시</u>	•	도
<u>지</u> 사 	·시장·군·	수 • 구청장 	
 제32조		· 어린이집)	1
(현형	생과 같음)	자 • 트 벌 자치	

<u>지사・시장・군수・구청장</u>-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을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 장애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 3. (생략)

-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어린이집의 원장은 매년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 항에 따라 지정받은 어린이집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 하여야 한다.
- 1. ~ 9. (생 략)
- ⑤ ~ ⑧ (생 략)

제33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저의 정보제공) ①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 보유하고 있

1. ~ 3. (현행과 같음)
③
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u>시장・군수・구청장</u>
<u>.</u>
④ <u>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u>
<u>지사·시장·군수·구청장</u>
1. ~ 9. (현행과 같음)
⑤ ~ ⑧ (현행과 같음)
세33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의 정보제공) ①
· • · · · · · · · · · · · · · · · · · ·

는 자격의 명칭, 발급기관, 취 득요건과 경력 등 서비스의 질 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2. · 3. (생략)

② ~ ⑤ (생 략)

제34조(지도와 감독) 보건복지부 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 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 장·군수·구청장은 복지지원 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복지 지원 제공기관 및 지역센터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제38조(이의신청) ① 제14조에 따른 복지지원 대용 결정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u>.</u>
1 <u>특별자치시장・특별자</u>
<u>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u>
<u>장</u>
2. • 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4조(지도와 감독)
<u>시 · 도지사 또는</u>
제38조(이의신청) ①
특별자치시장 · 특
<u></u> 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
청장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